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60
----------	---------

제출년월일 : 2018년 11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구정평가단의 기능에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 과정의 주민배심원단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여 구정 참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구정평가단의 기능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참여 근거 마련
- 나. 동별 인구수 대비 상한 인원 증원 추가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감사담당관-8168 (2018. 8. 8.)호 「공공갈등관리(소통)시스템 강화추진 계획」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 2018. 9. 19. ~ 2018. 10. 10. 결과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참여 및 의견 제출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구수 30,000명 이상의 동은 상한인원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증원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이하 “주민구정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제3조(구성) ① 주민구정평가단은 동별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u><단서 신설></u></p> <p>② (생략)</p>	<p>제1조(목적) ----- ----- ----- ----- ----- ----- ----- <u>필요</u>----- ----- -----.</p> <p>제2조(기능)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참여 및 의견 제출</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3조(구성) ① ----- ----- ----- ----- ----- <u>다만, 인구수 30,000명 이상의 동은 상한인원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증원 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제5조(임기) ① (생략)

② 구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촉 후
새로 위촉된 구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한 차례만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주민구정평가단의 주민배심원단 참여 근거 마련과 동별 인구 수 대비 상한 인원 증원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써 이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성 명	감사담당관 하 성 만 (담당 : 행정7급 박진영)
연락처	02-2600-6015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 개정사유

- 주민구정평가단의 기능에 주민배심원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구정 참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구정평가단 기능에 주민 배심원단 참여 근거 마련
- 동별 인구수 대비 상한 인원 증원 추가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주민구정평가단의 기능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의 주민 배심원단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고
- 동별 인구수 대비 상한 인원을 증원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구정 참여 기능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18-35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김현봉
입안주무부서	감사담당관	통보(조치)일		2018. 9. 2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서울강서039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감사담당관	
	담당자명	박진영	전화번호 02-2600-601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9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구정평가단의 기능에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 과정의 주민 배심원단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고, 동별 인구수 대비 상한 인원 증원하여 구정 참여 기능 강화 ○ 법령에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이 반영된 조항이 없으며, 성별 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에 있어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성별통계 반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10월 04일

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김화옥/02-2600-6762)

감사담당관장 귀하